2020년 8월 5일부터

수입검사만 받으면 반입이 허용되는 식물이 많아집니다!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증명서가 필요 없는 식물

(⚠ 수입검사는 필요)

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확인하세요→

커피 생두

약용 인삼(건조)

무말랭이

고춧가루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식물 방역관에게 수입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 다음 식물은 검사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됩니다. (※1)

◆ 검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 (수입검사는 필요)

◆ 건조 후 가공(세단, 파쇄, 분쇄, 압축)된 식물

예: 고춧가루, 무말랭이, 압맥, 분쇄 콩, 시나몬 스틱, 감초 등

◆ 건조된 식물

예: 약용 인삼, 커피 생두, 해바라기 씨(식용), 고비,
대회향(팔각) 등 (※2)

◆ 동결된 식물 (껍데기가 붙은 호두는 제외)

※1 재배, 사료, 비료, 농림업 생산자재로 사용되는 식물은 검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곡물류(쌀, 조, 옥수수, 메밀, 맥류 등), 콩류(대두, 팥, 땅콩 등), 목재, 카카오 콩, 참깨, 타마린드 건과, 고수, 드라이 플라워(일부), 한약(일부), 향신료(일부) 등은 건조된 것이라도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에 없는 식물의 예는 식물방역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식물방역소 홈페이지『검사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식물의 재검토에 대하여』
URL : https://www.maff.go.jp/pps/j/introduction/import/ipcfuyou/index.html

검사증명서 첨부가 필요한 식물에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식물이 폐기 처분됩니다.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및 수입 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의 반입이 금지된 식물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소에 문의해주십시오.

식물방역소 주요 연락처

- **요코하마 식물방역소**
  +81 – 45 - 211 - 7153
- **나고야 식물방역소**
  +81 – 52 – 651 - 0112
- **고베 식물방역소**
  +81 – 78 – 331 - 2386
- **모지 식물방역소**
  +81 – 93 – 321 - 2601
- **나하 식물방역사무소**
  +81 – 98 – 868 - 2850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農林水産省